

[별표 3]

육상국지예보구역(제6조제2항제2호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해당 특별시, 특별시, 시·군	수도권 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강화군 우도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서면도 우도 제외)	
옹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제외)	
부산,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울산,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광역시, 시·군	부산지방 기상청
광주,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해당 광역시, 시·군	광주지방 기상청
흑산도·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신안	전남 신안군(흑산면 제외)	
거문도·초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여수	전남 여수시(삼산면 제외)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해당 시·군	전주기상 지청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해당 시·군	강원지방 기상청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대전지방 기상청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해당 시·군	청주기상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지청
대구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대구지방 기상청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령,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칠곡, 성주, 포항, 경주, 영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안동, 의성, 청송	해당 시·군	
울릉도·독도	경북 울릉군	
제주도북부	제주시(구좌읍·한림읍·우도면·한경면 ·추자면·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 산지 제외)	제주지방 기상청
제주도동부	제주시 중 구좌읍·우도면(제주도북 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성산읍·표 선면(제주도남부중산간 제외)	
제주도서부	제주시 중 한림읍·한경면(제주도북 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	서귀포시(대정읍·성산읍·표선면·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시(추자면·우도면 제외)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남부중산간	서귀포시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중 산지 지역(해발고 도 600m 이상)	
추자도	제주시 추자면	

비고: 이 표에서 “중산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발고도 200m 이상 600m 미만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